

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1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2023. 12. 31.자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대 범죄피해자 발생 시 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5조)
 - 존속기한을 2028. 12. 31.까지 연장함.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6. 13. ~ 2023. 7. 3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4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[붙임 1]

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8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의정법무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의정법무과장 박 상 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법무팀장 장 두 성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정 소 윤 (행정 2830)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2028년 12월 31일 ----- ----- ----- -.</p>